

「전략물자수출입고시」를 개정함에 있어,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3일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
「전략물자수출입고시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상황허가 제도 합리적 개선 및 국제수출통제체제 전략물자 현행화

2. 주요내용

가. 對러시아 상황허가 면제사유 확대 (별표 24)

- 고시 제26조 제7호, 제15호 면제사유를 러시아 상황허가 면제대상에 추가 준용하고, 소비자 통신제품 거래 면제의 범주에 음악CD 등을 포함

나. '23년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품목 변동사항 반영 (별표 1, 2, 3, 4)

- 우리나라는 WA, NSG, MTCR, AG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바, '23년 4대 체제에서 회원국 합의로 채택된 전략물자 통제품목 변경사항을 고시 별표2, 별표3 등에 그대로 반영

3. 의견제출

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**2024년 5월 23일(목)까지**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(참조 : 무역안보정책과장, 주소 :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,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tie.go.kr> → 예산·법령 → 고시·공고 → 공고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라. 보내실 곳 :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

-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
- 전화 : 044-203-4836
- 메일 : dhkdt1018@korea.kr

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6조(개별수출허가의 면제) ① 전략물자 중 기술품이 아닌 것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. (신설) 다만, 목적지국가가 나의2 지역인 경우 또는 나의2 지역 국가 중 한 곳을 경유하거나 이들 국가 중 한 곳에서 환적하는 경우에는 제2호, 제3호에 한정하여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. 허가를 면제받는 경우 수출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전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른 사진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수출 후 7일 이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3. <u>별표 6에 따른 수출지역 구분 상 가 지역에 속한 국가의 정부로부터 최종사용자 및 사용 용도 등 심사를 거쳐 재수출허가를 받은 경우</u>. 다만,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.</p> <p>14. 「대외무역관리규정」 제2조에 따른 중계무역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로서 <u>별표 6에 따른 수출지역 구분 상 가 지역에 속한 국가의 정부로부터 최종사용자 및 사용 용도 등 심사를 거쳐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</u></p> <p>15호 신설</p> <p>15. <u>별표 2(이중용도품목)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을 보정, 수리를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또는 검사, 시험을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5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5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</u>. 다만,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, 초민감품목, 미사일기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, 초민감품목, 미사일기</p>	<p>제26조(개별수출허가의 면제) ① 전략물자 중 기술품이 아닌 것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. (신설) 다만, 목적지국가가 나의2 지역인 경우 또는 나의2 지역 국가 중 한 곳을 경유하거나 이들 국가 중 한 곳에서 환적하는 경우에는 제2호, 제3호에 한정하여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. 허가를 면제받는 경우 수출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전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른 사진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수출 후 7일 이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3. <u>별표 6의 수출지역 구분에 따른 가 지역에 속한 국가의 정부가 최종사용자 및 사용 용도 등 심사를 거쳐 재수출허가를 한 품목을 수입한 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경우</u>. 다만,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.</p> <p>14. <u>별표 6에 따른 수출지역 구분에 따른 가 지역에 속한 국가의 정부가 최종사용자 및 사용 용도 등 심사를 거쳐 수출허가를 한 품목을 「대외무역관리규정」 제2조에 따른 중계무역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의 방식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경우</u></p> <p>15. 다른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송 용기 등을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. 다만,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, 초민감품목, 미사일기중용도품목의 CAT1,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.</p> <p>16. <u>보정, 수리를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</u>. 다만,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, 초민감품목, 미사일기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, 초민감품목, 미사일기중용도품목의 CAT1,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술통체제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,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, 제18조제4항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.</u></p> <p>부칙 신설</p>	<p>17. <u>검사, 시험을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5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5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</u>. 다만,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, 초민감품목, 미사일기중용도품목의 CAT1,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.</p> <p>부칙 <제2024-383호, 2024. 0. 0.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, 별표 2,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안은 이 고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부 칙 <제2024-383, 2024.O.OO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

* 별표와 별지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(공고란)를 참조 바랍니다.